

仲裁研究, 第21卷 第1號
2011년 3월 2일 발행, pp. 215-237

논문접수일 2010. 10. 26.
제재확정일 2010. 11. 4.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s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of Gu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차 경 자*

Kyung-Ja Cha

최 성 일**

Sung-Il Choi

〈목 차〉

- I. 서 론
- II.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 현황
- III.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규칙과 절차
- IV.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사례
- V. 결 론

주제어 : 온라인중재, 중국, 광저우중재위원회, 온라인중재사례

* 주 서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이 사회활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라인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Online ADR: ODR)’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ADR의 온라인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996년 Virtual Magistrate가 최초의 온라인분쟁해결 모델을 구축한 이래 14년이 지났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ODR 제공자는 전 세계에서 46개에 불과하다.¹⁾ 이들은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상사분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재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한 중재의 특성상 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중재에 대한 개념이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아도 사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분야를 가지고 다양한 중재형식을 시도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다. 그 중에서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는 온라인중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부의 심리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선행연구는 주로 중국의 중재제도와 중재법에 집중되어 있고,²⁾ 중재기관에 대한 연구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³⁾ 중국의 온라인중재에 대한 연구 또한 CIETAC의 사례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⁴⁾

이에 본 연구는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사례연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온라인중재 절차와 진행과정을 소개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국내 온라인중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광저우중재위원회에 대한 연구나 온라인중재 사례연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전적으로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자료와 온라인중재 사이트의 자료에 의존하

- 1) The 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nd Dispute Resolution 홈페이지 <http://www.odr.info> 참고. (최종방문일:2010/09/30)
- 2)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제14권 제2호, 2004; 신군재,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제33권 제5호, 2008; 이주원,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제15권 제3호, 2005;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제32권 제3호, 2007.
- 3)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2005;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2006; 우광명,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1호, 2006;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제18권 제2호, 2008.
- 4) 차경자,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CIETAC의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제20권 제2호, 2010.

여 진행되었다.

II.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 현황

1. 광저우중재위원회 개황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의거하여 1995년 8월 29일 설립되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시행된 ‘중재법’에서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市)마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주요 도시마다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군소 중재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등록된 중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약 220 여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건처리 실적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곳은 202개이다.⁶⁾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중국 광동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인 광저우에 설립되어 있다. 광동성은 중국 전체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중에서 인구수, 지역총생산액과 수출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⁷⁾ 중국 경제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광동성에는 총 21개의 성급 직할시(地級市)가 설치되어 있으며,⁸⁾ 이 중 11개 도시에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⁹⁾

광저우는 성급 직할시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 1,03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수출입과 지방재정수입 등 경제 분야에서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圳)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⁰⁾ 경제규모만큼 상사중재규모도 크기 때문에 광저우중재위원회는 그 산하에 동관(東冠)과 중산(中山)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재원 명부에 의하면 광저우중재위원회는 680여 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¹¹⁾ 이들 중에는 홍콩과 마카오에 소재지를 둔 중국 혹은 외국국적의 중재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국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의 중재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건수는 전국 202개 중재

5) ‘중재법’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 있다.

6) 2009년 기준으로 70여개의 중재기관이 100건 미만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중 35개 기관은 5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國仲裁網 홈페이지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1743>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7) 中國國家統計局編, 「2009年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8) 地級市는 각 성부 산하에 설치된 직할시를 의미하며, 그 산하에 區와 縣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283개의 성급 직할시가 있다.

9) 11개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广州仲裁委員會, 深圳仲裁委員會, 江門仲裁委員會, 肇慶仲裁委員會, 汕頭仲裁委員會, 韶關仲裁委員會, 惠州仲裁委員會, 佛山仲裁委員會, 珠海仲裁委員會, 清遠仲裁委員會, 梅州仲裁委員會. 이 외에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화남지역 분회가 선전(深圳)에 있다.

10) 中國國家統計局編, 「2009年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11) 广州仲裁委員會 홈페이지 <http://www.gzac.org/zcy.asp> 의 중재인 명부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위원회 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 수는 4,345건, 분쟁금액은 67억 元(약 10억 달러)이다. 2009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 수가 318 건(알선 제외), 분쟁금액은 653,842,444달러였다는 것을¹²⁾ 감안하면 광저우중재위원회의 규모가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사건규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세계적인 중재기관보다 많은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¹³⁾

이 외에도 광저우중재위원회는 광저우시(市) 공상관리국과 연합으로 ‘공상조정센터(工商調解中心)’를, 사법국과는 ‘조정센터(廣州仲裁委員會調解中心)’를, 지식재산권국과는 ‘지식재산권 중재센터(知識產權仲裁中心)’를 운영하고 있는 등 광저우시 인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중국 중재기관별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억元)

순 위	2009년			2008년		
	중재기관	신청건수	분쟁금액	중재기관	신청건수	분쟁금액
1	武漢仲裁委員會	9,770	55.7	武漢仲裁委員會	7,808	53.8
2	廣州仲裁委員會	4,345	67.0	廣州仲裁委員會	4,050	63.9
3	重慶仲裁委員會	2,238	18.9	北京仲裁委員會	2,057	86.8
4	深圳仲裁委員會	1,984	26.5	重慶仲裁委員會	2,035	20.1
5	西安仲裁委員會	1,858	13.5	深圳仲裁委員會	1,966	33.5
6	北京仲裁委員會	1,830	88.3	CIETAC	1,230	209.0
7	駐馬店仲裁委員會	1,517	20.5	西安仲裁委員會	1,116	12.7
8	CIETAC	1,482	172.4	上海仲裁委員會	1,086	40.3
9	上海仲裁委員會	1,187	44.3	南京仲裁委員會	917	13.7
10	無錫仲裁委員會	1,150	11.8	成都仲裁委員會	915	4.4
전체		74,811	961.0	전체	65,074	1,021

자료: 广州仲裁委员会 홈페이지 <http://www.gzac.org>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12)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claim/1020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13) 2009년 한 해 동안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는 836건,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CC는 817건,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는 602건,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은 272건,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는 215건, 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은 172건의 중재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Stephan Wilsk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February, 2010 참고.

2.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현황

광저우중재위원회는 CIETAC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온라인중재를 시도한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CIETAC에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는 도메인네임분쟁사건만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사중재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광저우중재위원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으로 상사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중재분야에 있어서는 CIETAC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중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중재절차의 일부 혹은 전부가 온라인방식으로 대체된 형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¹⁴⁾ 광저우중재위원회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인터넷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 간의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온라인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위원회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통지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온라인중재사이트인 ‘中國商事仲裁網(www.ccarb.org)’을 개설하여, 신청 및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사자가 온라인중재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사건중계실(案件直播室)’을 개설하여 사건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모든 심리내용을 판정 후에 공개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중국식 온라인중재를 가장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사분쟁 사건 이외에도 광저우중재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행정쟁의의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公用事業收費糾紛網上仲裁規則)’을 제정하여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상사중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사건중계실’에 공개된 9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1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차경자(2010, pp.134-135)를 참고할 것.

15)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la_about.php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16) 中國商事仲裁網 案件直播室 <http://www.ccarb.org/case/index.php>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III.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규칙과 절차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상사중재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하 광저우중재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광저우중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당사자는 광저우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중재 사이트인 ‘中國商事仲裁網(www.ccarb.org)’를 통해 온라인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요금분쟁사건에 한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중재규칙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온라인중재 준거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저우중재규칙’과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실제 온라인중재가 진행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1.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준거규칙

(1)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광저우중재규칙은 1995년 8월,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후 1996년 1차 수정과 2000년 2차 수정을 거쳤다. 2003년 11월에는 전면 개정된 새로운 중재규칙이 시행되었다. 현행 광저우중재규칙은 이를 수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총 9장 7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2003년 광저우중재규칙에서는 소비자분쟁, 금융중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2007년 수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 동시에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 규칙’과 ‘금융중재규칙(廣州仲裁委員會金融仲裁規則)’¹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중재 과정에서의 조정과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중재요금수납방법(廣州仲

17)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신청과 접수, 제4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5장 증거, 제6장 심리와 판정, 제7장 신속절차, 제8장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특별규정, 제9장 부칙.

18)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은 총 12장 133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신청과 접수, 제4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5장 증거, 제6장 심리와 판정, 제7장 기간과 송달, 제8장 신속절차, 제9장 섭외중재에 대한 특별규정, 제10장 소비자분쟁에 대한 특별규정, 제11장 금융중재에 대한 특별규정, 제12장 부칙.

19)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저우중재위원회 금융중재규칙’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금융중재의 대상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분쟁이다.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간 및 금융기관과 기타 법인 및 자연인 간에 화폐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금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인민폐와 외화에 대한 자금용통, 유가증권과 어음의 양도와 매매 등이 포함된다(동 규칙 제2조). 본 규칙에 의해 금융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제4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제6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제12조). 중재비용은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요금수납방법’이 명시한 비용의 1/2만 납부하면 되는 등(제13조), 일반 상사중재에 비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裁委員會仲裁收費辦法)'을 적용한다. '광저우중재규칙'은 광저우중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동관(東冠)지부와 중산(中山)지부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규정이 모델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특징적인 부분만 소개하고자 한다.

1) 중재 적용범위와 중재합의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 적용범위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에 한정되어 있다.²⁰⁾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에 관한 민사사건, 노동쟁의와 법에 의해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은 처리하지 않는다.²¹⁾ 이 외에도 농업집체경제조직 내부의 농업청부경영계약에 관한 분쟁도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²²⁾ 이상과 같이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CIETAC과²³⁾ 민사분쟁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²⁴⁾ 비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집체경제조직 관련 분쟁에 관한 조항은 다른 중재규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규정이다.²⁵⁾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하며, 전보, 전신,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의 디지털로 전송되는 문서의 형식도 서면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⁶⁾ '서면형식'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온라인중재에 필수적인 문서의 디지털전송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재규칙을 온라인중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중재합의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재기관에 대한 명확성이다. 중재기관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²⁷⁾ 이 때문에 '광저우중재규칙'에는 중재기관의 명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광저우중재위원회'라는 정확한 명칭 이외에도, '광저우시 중재기관', '광저우시 동관(혹은 중산)중재위원회', '광저우 동관(혹은 중산)의 경제계약중재기관'이라 명시해도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의 체결지 혹은 이행지가 광저우, 동관 혹은 중산일 경우, '계약체결지의 경제계약중재

20) 광저우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차용계약, 합작계약, 건설공정계약, 부동산개발계약, 주택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용지계약, 도급계약, 기술계약, 금융증권, 보험계약, 보관관리계약 등에 관한 상사분쟁사건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www.gzac.org/info_view.asp?VID=83 참고.(2010/09/30 최종방문)

21)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 이는 2006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재법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2)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 제2항 2호.

23) 'CIETAC 중재규칙'에는 국제적 또는 섭외적 분쟁사건,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분쟁사건, 국내분쟁사건을 수리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제3조) 이는 중국 '중재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 양육, 후견, 부양, 상속상의 분쟁과 법에 의해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분쟁 이외의 분쟁은 모두 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서는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는 상거래상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민사분쟁 역시 해결 가능하고, 분쟁 당사자가 정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중재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25) 광저우중재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를 제외시킨 것은 중국농업부에서 '농촌토지청부경영계약분쟁에 대한 중재규칙(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規則)'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6)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8조 제2항.

27) 중국 '중재법' 제18조.

기관' 혹은 '계약이행지의 계약중재위원회'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²⁸⁾

2) 중재절차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한다.²⁹⁾ 접수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통지서, 중재규칙, 중재원명부, 중재인 선정양식,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발송한다.³⁰⁾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발송해야 한다.³¹⁾ 반대신청은 중재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발송하고, 신청인은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³²⁾ 각 당사자는 1-2인의 중재대리인을 선정하여 모든 절차를 위임할 수 있으며,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³³⁾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3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이 1인씩 선정하고, 중재위원회에서 수석중재인을 선정한다. 단독 중재판정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중재위원회가 선임한다. 심리는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들이 구두심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³⁴⁾ 구두심리장소는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접수된 광저우중재위원회, 동관과 중산지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쳐 기타 지방의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³⁵⁾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당사자들이 협의하면 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과 관련되는 사건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³⁶⁾ 구두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위원회는 그 내용을 녹음 혹은 촬영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위원회와 중재판정부 이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³⁷⁾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은 중재기록을 확인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³⁸⁾

28)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0조 제1항.

29)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3조 제1항.

30)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4조.

31)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5조.

32)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6조 제1항, 제2항.

33)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0조 제1항, 제2항.

34)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6조.

35)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7조.

36)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8조.

37)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4조 제2항.

38)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4조 제3항, 4항.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기한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³⁹⁾ 광저우중재위원회는 그 산하에 ‘전문가 자문위원회(專家諮詢委員會)’를 설치하여, 중재판정부가 판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반영하지 않을 시에는 중재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⁴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금액이 20만元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는 간이절차(簡易程序)를 적용한다. 20만元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분쟁금액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간이 절차 적용여부를 결정한다.⁴¹⁾ 간이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⁴²⁾

3)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특별규정

1995년 중국 ‘중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섭외중재사건을⁴³⁾ 전담하여 처리해왔던 CIETAC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 이외에, 지방정부에 설립된 중재기관도 섭외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에는 ‘섭외중재’ 혹은 ‘국제중재’에 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어 있다.⁴⁴⁾

광저우중재규칙에서는 국제중재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제중재사건은 중재신청 접수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내 5일)에 당사자들에게 중재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국내 15일)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며, 45일 이내(국내 15일)에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대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최초 심리일이 결정되면 30일 이전(국내 7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국내 4개월)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⁴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국내중재에 비해 각 절차의 기한에만 차이가 있고,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국내중재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39)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7조.

40)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9조.

41)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6조.

42)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62조.

43) 섭외중재는 섭외요소가 있는 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海事) 행위 중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를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중재법” 제65조). 여기서 언급된 섭외요소란 (1)당사자의 일방 이상이 외국인, 무국적자, 혹은 국제경제조직이거나, (2)분쟁의 목적물이 외국에 있거나, (3)분쟁을 야기한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발생, 변경 혹은 소멸에 관련된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거나, (4)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요소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일부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92년 7월14일)참고. 현재는 섭외중재보다는 국제중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

44) 반면에 원래 섭외중재기관이었던 CIETAC의 중재규칙은 섭외중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국내중재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45)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65-69조.

4) 중재비용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비용은 국무원이 제정한 ‘중재위원회 중재비용방법(仲裁委員會收費辦法)’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중재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성급 인민정부 물가관리국(物價管理局)의 비준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⁴⁶⁾

광저우중재위원회 역시 광동성 인민정부 물가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비용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재비용은 ‘사건접수비’와 ‘사건처리비’로 구분된다. 사건접수비는 분쟁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사건처리비에는 ①중재인의 출장비, 구두심리기간에 소요되는 숙식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②증인, 검정인, 번역원 등 심리로 인해 지출되는 숙식비, 교통비, 심리참석으로 인한 손해비용, ③자문, 검증, 현장검증, 번역에 필요한 비용, ④복사, 사건자료 발송 및 작성에 대한 비용, ⑤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②와 ③번 항목은 중재신청 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다.⁴⁷⁾ 신청자는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표 2〉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사건접수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분쟁금액	1,000元이하	1000元-5만元	5만-10만元	10-20만元	20-50만元	50-100만元	100만元이상
비율		5%	4%	3%	2%	1%	0.5%
가산금액	200元	50元	550元	1,550元	3,550元	8,550元	13,550元

* 중재비용 산정공식: 중재비용 = 사건접수비(분쟁금액×비율+가산금액) + 사건처리비⁴⁸⁾

(2)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이하 공익사업규칙)’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저우중재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⁴⁹⁾ 광저우중재위원회는 2007년 중재규칙을 수정하면서 기존의 ‘소비자분쟁에 관한 특별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새롭게 제정한 공익사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⁵⁰⁾ 기존의 소비자분쟁이 주로 공익사업 요금에 관련된 것이 많았고, 분쟁금액도 소액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중재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익사업규칙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기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6)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비용방법’ 제4조, 제8조.

47)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비용방법’ 제7조.

48) 廣州仲裁委員會 홈페이지 http://www.gzac.org/info_view.asp?VID=91 (최종방문일:2010/09/30)

49)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 제18조.

50)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 제16조.

공익사업규칙에 의거하여 온라인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과 수도, 전기, 가스, 공공교통, 전신·통신 등 공익분야 간에 공익사업 서비스계약으로 인해 야기된 요금분쟁’이다.⁵¹⁾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상사분쟁과 마찬가지로 ‘中國商事仲裁网(www.ccarb.org)’를 통해 이루어진다. 양방 당사자가 본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만 하면 바로 온라인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⁵²⁾ 이는 공익사업 요금분쟁은 그 특성상 사전에 중재합의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본 규칙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중재신청을 하면, 중재위원회는 신청 당일에 접수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해야 한다.(제6조)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⁵³⁾ 중재청구의 변경이나 반대신청을 해야 한다.(제8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위임받아 선정한다.(제9조)

심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들은 반드시 심리일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진술하고, 변론해야 한다.(제10조) 당사자가 서면심리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면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4조) 중재인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제11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는 해당 사이트에 도달했을 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중재위원회나 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자료는 최초로 당사자의 컴퓨터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송달일자로 간주한다.(제13조)

온라인중재 진행과정에서 중재판정부가 사건정황이 복잡하여 오프라인 중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14조) 온라인 중재비용은 최소 50元부터 시작하며, 앞서 언급한 중재비용의 절반을 감면해준다.(제15조)

2. 광저우중재위원회 온라인중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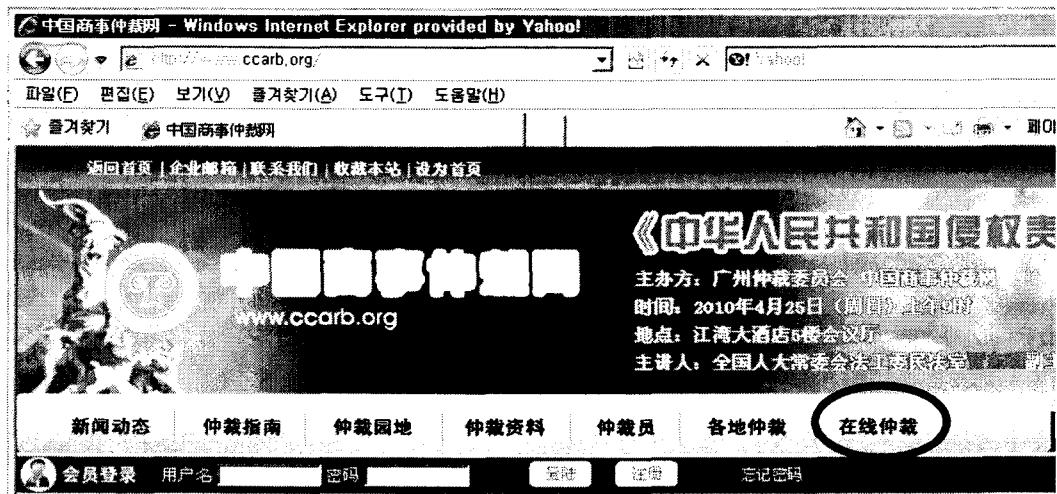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中國商事仲裁网(www.ccarb.org)’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在線仲裁’⁵⁴⁾ 메뉴를 클릭한다.

51)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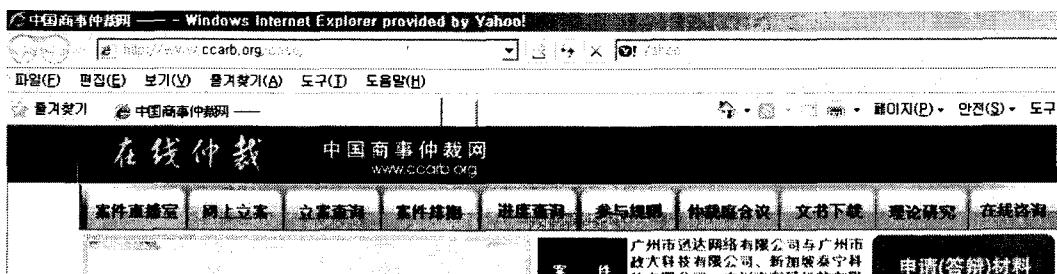
52) ‘공익사업 요금분쟁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 제1조.

53) 본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온라인중재절차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첫째, 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사이트에 관리상의 결함이 존재할 때, 둘째, 일방 당사자가 온라인중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셋째, 중재위원회 혹은 중재인이 인정한 기타 상황이 존재할 때이다.(제12조)

〈그림 1〉 中國商事仲裁网 메인화면



〈그림 2〉 '在線仲裁' 메인화면



〈표 3〉 광저우중재위원회 온라인중재(在線仲裁) 메뉴의 구성과 내용

	메뉴 구성	주요 내용
在 線 仲 裁	案件直播室 (사건중계실)	온라인 대화방 형식의 화면에서 실제 진행된 심리내용을 볼 수 있고, 코멘트도 가능함.
	网上立案 (온라인 사건신청)	온라인사건 신청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약관에 동의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감. 신청화면에서 사건제목, 연락인, 성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立案查詢 (사건 검색)	사건번호, 사건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사건 열람가능
	案件排期 (사건 일정판)	현재 공개된 9개 사건에 대한 일정과 내용이 수록

54) 중국에서는 온라인仲裁를 '在線仲裁' 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网上仲裁'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며, 법률문서에서는 '网上仲裁'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文書下載 (문서양식 다운로드)	進度查詢 (진행상황 검색)	현재 공사 중
	參與規則 (참여규칙)	사건중계실의 사용규칙
	仲裁廳合議 (중재판정부 합의)	중재인 전용란으로 사건번호와 중재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여 합의를 진행함.
		당사자와 대리인의 중재 준칙 서약서 양식
		중재합의서 양식
		중재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양식
		당사자의 제출서류 목록 양식
		중재인선정 결과표 양식
		위임장(개인/기업) 양식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제출양식
		재산보전신청서 양식
		증거보존신청서 양식
		중재문서 송달지 확인서(신청인/피신청인) 양식
理論研究 (이론연구)	중재에 관한 논문 수록	
在線諮詢 (온라인 자문)	온라인 상담코너	

자료: 中國商事仲裁網 www.ccarb.org 의 在線仲裁 메뉴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在線仲裁’의 메뉴 중에서 ‘網上立案(온라인 사건신청)’을 클릭하면, 온라인 사건신청 설명과 약관이 뜨는데, 이때 ‘동의’를 선택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신청’화면에서 사건제목, 연락인, 성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 한다. 사건에 관련된 문서자료는 모두 스캔하여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서 접수결정이 나면 중재비용을 청구하고,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직접 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중재비용과 온라인으로 제출한 원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직접방문은 이때가 유일하다. 중재위원회는 온라인제출서류와의 대조작업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일 이내에 온라인중재 절차개시를 통지한다.⁵⁵⁾

일반 상사중재사건일 경우에는 ‘광저우중재규칙’, 공익사업 요금분쟁일 경우에는 ‘공익사업규칙’에 의거하여 온라인중재를 진행한다. 당사자들은 ‘사건중계실 사용규칙(案件直播室規則)’⁵⁶⁾에 따라 실시간으로 온라인심리에 참여한다. 심리 후 당사자들이 심리내용 공개

55) ‘网上立案說明’ http://www.ccarb.org/case/la_about.php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56) ‘사건중계실 사용규칙’: 1)‘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사건공개에 합의하면 광저우중재 위원회는 ‘사건중계실’의 심리과정을 공개한다. 2)‘사건중계실’이 공개하는 내용은 사건의 진행과정과 사건

에 동의한 사건에 한해서 일반인들도 중재신청서, 답변자료, 증거자료, 중재판정문까지 해당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을 열람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IV.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사례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광저우중재위원회의 ‘中國商事仲裁網’을 통해 온라인중재를 진행한 총 9건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의 법리해석이 아니라,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온라인중재라는 형식을 통해 상사분쟁이 해결되는 절차와 운영방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9건의 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공간인 ‘사건중계실’의 운영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분쟁성격

9건 모두 상사계약분쟁이지만 계약의 성격은 모두 달랐다. 이를 <표 5>에서 표기한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번 사례 ‘迅達網絡 vs. 政大科技, 泰寧科技와 東風科技’는 합작계약분쟁사건이다. 신청인은 인터넷기기판매회사이다. 피신청인1은 전자제품판매회사, 피신청인2는 광저우시에 대표사무소를 둔 싱가포르의 전자종이 생산회사, 피신청인3은 피신청인1의 자회사이다. 2007년 신청인은 전자종이 총판대리상이 되기 위해 피신청인1, 2와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2의 중국전체 총판대리상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후 피신청인2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종이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피신청인3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합작계약 무효와 그동안 지불한 보증금과 제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중재신청을 하였다.⁵⁷⁾

2번 사례 ‘和逸貿易 vs. 智高電子’는 수입판매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독일산 고무장판을 수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이 갑자기 3차 판매물량의

개요를 포함하여 중재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자료, 증거자료, 심리기록, 중재판정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중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판정부의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3)당사자, 中國商事仲裁網의 회원 및 기타 일반인들 모두 ‘사건중계실’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고, 사건의 쟁점 혹은 기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거나 논평할 수 있다. 4)만약 참관인이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인에게 의견이 있다면, 회원의 신분으로 로그인하여 의견 혹은 논평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5) 만약 ‘논평’란에 의견이나 논평을 작성할 경우에는 인터넷 윤리를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며, 타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http://www.ccarb.org/case/menu.php?doAction=casegzb>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57)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7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색상변경을 요청했지만 독일공장에서 해당물량을 생산 완료한 상태여서 변경이 불가능했다. 신청인은 기존 주문대로 물량을 공급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금지급청구를 취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⁵⁸⁾

3번 사례 ‘東莞發展銀行寶安支行 vs. 寶安昌盛’는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유동자금 150만元에 대한 대출계약과 이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출금상환과 재산압류 및 우선변제권을 취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⁵⁹⁾

4번 사례 ‘軍威로펌 vs. 萬易實業’는 변호사 위임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3자간에 발생한 토지사용권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고, 승소할 경우 20%의 수임료를 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분쟁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때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승소 시 15%의 수임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 승소한 후 피신청인은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1,2심 각각의 승소사례금지불을 청구하는 취지의 중재신청을 하였다.⁶⁰⁾

5번 사례 ‘南方廣嶺 vs. 鼎新信用, 赫爾房地產’는 융자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신용보증회사인 피신청인1을 통해 1,1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융자계약을 체결했다. 신청인은 27만元의 융자비용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의 보증을 섰다. 기한 내 자금조달이 실패하자 신청인은 융자비용반환과 위약금지급을 취지로 중재신청을 하였다.⁶¹⁾

6번 사례 ‘神山計算机 vs. 冠達工程, 太達集團’는 건설공사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말뚝기초(pile foundation)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700만元을 지급하였고, 피신청인2는 1의 보증을 섰다. 이후 신청인은 말뚝의 길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부실공사를 이유로 계약해지확인과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취지로 중재신청을 하였다.⁶²⁾

7번 사례 ‘大勝石油 vs. 三田粮油’는 설비공사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일탱크 확장과 그에 따르는 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잔금지급이 미루어지자 잔금지급청구를 취지로 중재신청을 하였다.⁶³⁾

8번 사례 ‘陳志新 vs. 王浩明, 赫爾房地產’은 주택매매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부동산중개인인 피신청인2를 통해 피신청인1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계약금 30만元과 중개료 1만2천元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이 제3자에게

58)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5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59)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3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0)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2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1)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1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2)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0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3) 中國商事仲裁网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19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해당 주택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신청인은 계약금과 중개료 반환을 취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⁶⁴⁾

9번 사례 ‘佳其企業 vs. 張一民’은 점포임대계약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년 기한으로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피신청인이 점포영업을 그만두자 신청인은 임대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밀린 임대료에 대한 지불을 취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⁶⁵⁾

이상에서 온라인중재를 신청하는 분쟁의 성격이 일반상사중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매매, 변호사수임료 등의 영역까지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삽입되는 등 중국에서는 중재가 실생활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분쟁금액과 중재비용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표 2>와 같이 중재비용을 7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익사업 요금분쟁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명시된 비용의 절반이 감면되지만, 일반 상사중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감면 혜택이 없다. 9건의 사례에 대해 분쟁금액과 중재비용을 분석한 결과, 7구간(100만元 이상)에 해당되는 사건이 4건, 6구간(50만-100만元) 1건, 5구간(20만-50만元) 4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쟁금액은 231만元(약 4억 원)이었다. 이는 온라인중재는 분쟁금액이 소액일 때 적합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중재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과 비교해보면, 3억 원 이상은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이 낮고, 이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비용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양 기관의 구간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⁶⁶⁾ 각 사례의 분쟁금액을 양 기관의 중재비용 산정기준에 맞추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분쟁금액과 중재비용 비교

사례 번호	분쟁금액		중재비용	
	인민폐(元)	한화 환산액(원)	광저우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기준
1번	516만	9억 3천만	51,160元 (920만원)	1,300만원+경비+중재인수당
2번	83만	1억 5천만	21,377元 (390만원)	76만원+경비+중재인수당
3번	205만	3억 7천만	32,241元 (580만원)	860만원+경비+중재인수당
4번	215만	3억 9천만	30,404元 (550만원)	880만원+경비+중재인수당

64)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7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5)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case_detail.php?VID=6 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66)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의 ‘중재비용’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5번	28만	약 5천만	12,550元 (220만원)	25만원+경비+중재인수당
6번	934만	16억 8천만	조정합의	-
7번	34만	6천 1백만	13,333元 (240만원)	30만원+경비+중재인수당
8번	33만	약 6천만	13,250元 (238만원)	29만원+경비+중재인수당
9번	36만	6천 5백만	13,996元 (250만원)	32만원+경비+중재인수당

환율: 1元=180원.

자료: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case_list.php에서 정리.(최종방문일:2010/09/30)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의 '중재비용계산' 참고.(최종방문일:2010/09/30)

3. 온라인 심리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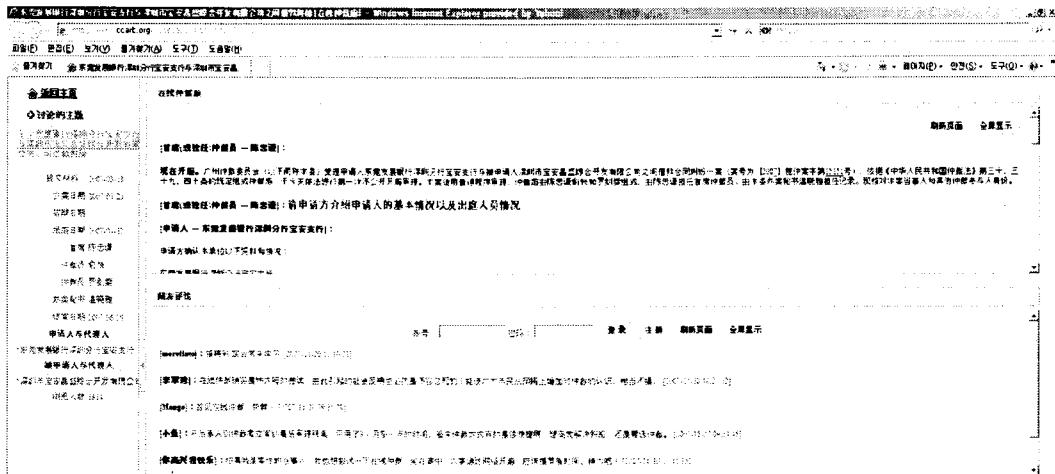
9건의 사례 모두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사건중계실'을 통한 온라인 심리를 진행하였다. 심리일자가 정해지면 중재인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은 '사건중계실'에 접속해야 한다. '사건중계실'의 화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은 사건소개란으로 진행과정, 중재인 성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은 대화창으로 온라인 채팅으로 하듯이 실시간으로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질의와 응답을 진행한다. 모든 진행은 실제 구두심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른쪽 하단은 일반인들이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곳인데, 2번의 심리가 진행된 6번 사례의 경우, 의견 수가 26건에 달했다. 이해를 돋기 위해 <그림 3>에서는 3번 사례의 온라인심리를 캡처하였으며,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림 4>와 같다.

9건의 사례 중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었고, 심리 후 조정으로 합의한 경우가 1건 있었다. 반대신청은 1번 사례에서 피신청인1이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였다. 중재청구 내용이 전부 인정된 경우는 2건, 부분 인정은 7건으로 중재신청의 실익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저우중재규칙에 의하면 국내사건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4개월, 섭외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⁶⁷⁾ 싱가포르 회사가 피신청인2로 참여한 1번 사례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도 모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는 등 절차와 기한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7) '광저우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7조, 제69조.

〈그림 3〉 사건중계실(案件直播室)의 실제 화면68)



〈그림 4〉 사건중계실(案件直播室)의 실제 화면 번역본

홈페이지 돌아가기		온라인 심리	
토론주제		새로고침	전체화면
東莞發展銀寶安支行vs. 寶安昌盛			
신청일	2007-03-23		
접수일	2007-03-23		
답변일			
중재판정부 구성	2007-04-27		
수석중재인	陳忠謙		
중재인	俞快		
중재인	羅劍雯		
담당서기	溫曉雅		
판정일	2007-06-28		
신청인/대리인			
東莞發展銀寶安支行/ 陳金, 彭劍			
피신청인/대리인			
寶安昌盛/ 雷義, 陳煥榮			
방문자	1814		

	회원평론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새로고침	전체화면
<p>[李翠珍]:온라인중재는 정말 대담한 시도다. 이로인한 사회적 반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광저우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2007-11-20 14:27:32]</p> <p>[你高興我快樂]:만약 내가 사건당사자라면, 나도 온라인중재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시간과 경력을 얼마나 아낄 수 있겠는가![2007-11-19-17:41:35]</p>						

〈표 5〉 광저우 온라인중재사례 일람표

구분	사건당사자		분쟁성격	분쟁 금액	중재 비용	판정결과	중재일자
	신청인	피신청인					
1	(유)迅達網絡	(유)政大科技	합작계약분쟁 ·독점대리점 ·제품공급	516만元	51,160元	중재청구 부분인정 반대신청 기각	신청:'07/08/16 판정부:'07/11/05 심리:'08/01/03 판정:'08/04/28
		(싱)泰寧科技					
		(유)東風科技					
2	(유)和逸貿易	(유)智高電子	판매계약분쟁 ·수입품판매 ·대금미지급	83만元	21,377元	중재청구 전부인정	신청:'07/11/06 판정부:'07/12/09 심리:'07/12/25 판정:-
3	東莞發展銀行 寶安支行	(유)寶昌盛	대출계약분쟁 ·대출잔금지불 ·담보물권행사	205만元	32,241元	중재청구 부분인정	신청:'07/03/23 판정부:'07/04/27 심리:'07/05/30 판정:'07/06/28
4	軍威로펌	(유)萬易實業	위임계약분쟁 ·승소사례금	215만元	30,404元	중재청구 부분인정	신청:'07/04/26 판정부:'07/05/21 심리:'07/05/30 판정:'07/06/20
5	(유)南方廣嶺	(유)鼎新信用	융자계약분쟁 ·비은행권융자 ·융자실패책임	28만元	12,550元	중재청구 부분인정	신청:'07/04/20 판정부:'07/05/15 심리:'07/06/19 판정:'07/07/17
		(유)赫爾房地產					
6	(유)神山計算機	(유)冠達工程	건설공사계약 ·부실공사 ·계약해지책임	934만元	-	조정합의	신청:'07/02/02 판정부:'07/04/29 심리:'07/05/08(1) '07/11/14(2) 판정: 조정
		(유)太達集團					

7	(유)人勝石油	(유)三田粮油	설비공사계약 ·대금미지급 ·계약위반책임	34만元	13,333元	중재청구 전부인정	신청: '07/04/13 판정부: '07/05/16 심리: '07/06/20 판정: '07/07/23
8	陳志新	王浩明	주택매매계약 ·이중매매 ·중개인책임여부	33만元	13,250元	중재청구 부분인정	신청: '07/09/18 판정부: '07/10/15 심리: '07/10/30 판정: '07/11/09
		(유)赫爾房地產	점포임대계약 ·임대료미납 ·임대기간산정	36만元	13,996元		신청: '07/02/01 판정부: '07/04/19 심리: '07/05/15 판정: '07/07/02

* 표 안의 (유)는 중국의 유한책임회사를, (싱)은 싱가포르회사를 뜻함.

자료: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case/case_list.php에서 정리.(최종 방문일: 2010/09/30)

V. 결 론

이상에서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에 대해 살펴보았다.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세계 유수의 중재기관에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저우중재위원회는 2007년부터 상사중재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소개되어 왔던 온라인분쟁해결이 별도의 독립된 ODR제공자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광저우중재위원회는 자신의 중재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중재절차만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온라인중재를 위한 별도의 중재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분쟁의 경우 광저우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광저우중재위원회의 중재적용범위가 계약분쟁 및 기타 재산권분쟁에 한정되어있다는 점과, 중재비용 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광저우시 인민정부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자주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각 단계 별로 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중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과, 국제상사중재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분쟁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중재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저우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오프라인중재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규모와 범위도 다양하여 일반적인 상사분쟁도 충분히 온라인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일반적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온라인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온라인중재는 이동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 더욱 매력적이고, 아직 시행 중인 중재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점효과가 뛰어나다. 한국은 IT강국으로 인터넷보급율과 사용률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온라인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고, 특히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저우중재위원회가 자신에 맞는 온라인중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듯이, 한국도 한국적 특색을 가미한 온라인중재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오프라인 중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온라인중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도 온라인중재 시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신군재,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제33권 제5호, 2008.
- 신군재, “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중재규칙의 비교연구”, 「중재연구」제18권 제2호, 2008.
- 윤충원·하현수,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학회지」제32권 제3호, 2007.
-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2005.
-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2006.
-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1호, 2006.
- 이주원,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제15권 제3호, 2005.
- 차경자,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CIETAC의 DNDRC 조정을 중심으로”, 「국제상학」제23권 제4호, 2008,
- 차경자, “중국의 온라인중재 운용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CIETAC의 온라인중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제20권 제2호, 2010.

최석범,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제14권 제2호, 2004.
Stephan Wilsk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February, 2010.

中國國家統計局編, 「2009年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9.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廣州仲裁委員會 <http://www.gzac.org/zcy.asp>

中國商事仲裁網 <http://www.ccarb.org>

中國仲裁網 <http://www.china-arbitration.com>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s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of Gu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Kyung-Ja Cha
Sung-II Choi

There are more than two hundred arbitral institutions in China. Some of them are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such as CIETAC and Gu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GAC). GAC, founded in 1995, is the second largest arbitral institution in China which accepts more than 4,000 cases a year. With extensive experiences in arbitration, GAC has conducted online arbitration procedures since 2007. Moreover it opened the whole process of online hearing to the public through the Internet.

With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ai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online arbit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GAC practices. To meet the purpose, status quo, rules and procedure of online arbitration of GAC are outlined, followed by introducing nine cases conducted by GAC. The scope of GAC online arbitration is comparatively narrow and the institution is still under the government supervision. But the practices of GAC proved that online arbitration is fully admissible and effectiv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Key Words : Online Arbitration, China, GAC, Online Arbitration Case